[붙임]

# 지역인재 의무채용

□ **관련근거** : 『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』제29조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2

□ **채용인원이 6명 이상인 모집단위에 한해 30% 의무채용 적용**

○ 대상 : 최종학력 기준(대학원 이상 제외)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지역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[1] 졸업(예정[2])자

□ **우대내용** : 각 모집단위 전형별 지역인재 합격인원이 목표합격률(30%) 미달 시 합격인원 외 추가 선발(단, 커트라인 총점 –5점 미만자는 제외)

ex) 필기합격자 커트라인 총점(직업기초능력+직무수행능력+가점) 75점일 경우

☞ 채용 목표인원 미달 시 70점 이상부터 추가합격 대상자로 인정

□ **추가합격자 선정기준**

○ (필기전형)직업기초능력(50%)+직무수행능력(50%)+가점 합산 고득점순

○ (면접전형)직업기초면접(50%)+직무수행능력(50%)+가점 합산 고득점순

※ 지역인재 추가합격자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름

□ 지역인재 해당자는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지역 학교 졸업(예정)자임을 입사지원시 반드시 입력(체크)하여야 하며, **<u>미입력 시 우대불가</u>**

---

1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(단, 사이버대학은 제외)

2) **접수마감일(2024.4.30)**기준 졸업(예정)자에 한하며, ‘대학졸업예정자’란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접수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, 면접 전형당일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를 뜻함